

이 천 ~ 오 산 고 속 도 로 민 간 투 자 사 업 및
화 성 동 탄 (2) 지 구 택 지 개 발 사 업 (재 협 의)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 의 의 견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공 개)

2016. 10

제 이 외 광 순 환 고 속 도 로 (주)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 경 기 도 시 공 사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내용

1.1.1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사업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치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경부고속도로 동탄JCT)

○종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중부고속도로 곤지암JCT)

다.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라.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마. 협의기관 : 환경부

바. 사업의 주요내용

1) 주요 경유지

- 동탄(2)신도시~용인시 북측~포곡읍~곤지암JCT

2) 노선계획 현황

- 공구별 계획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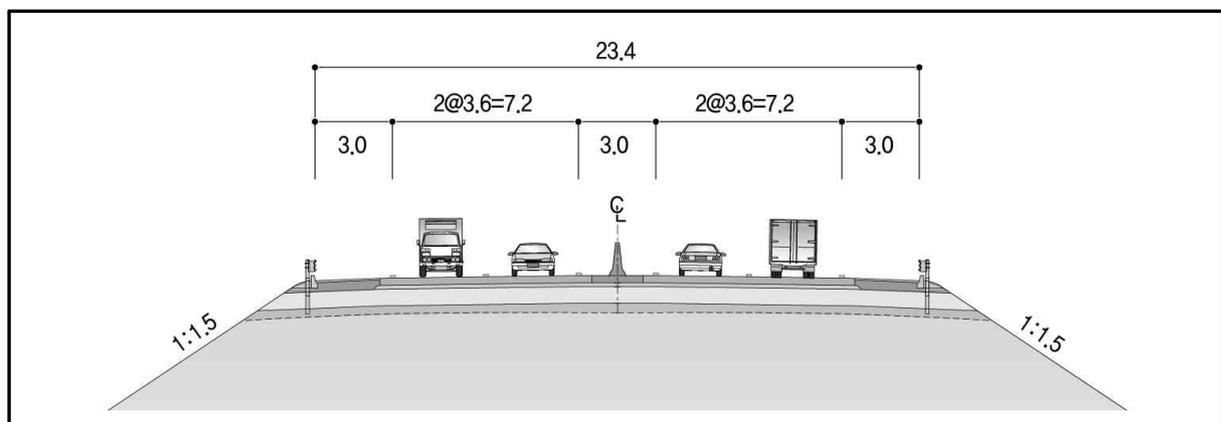
구분	측점(STA.)	연장(L)	시·종점	출입시설	설계속도	비고
노선 현황	1공구 STA.0+000 ~STA.8+500	본선: 8.50km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동탄JCT 동탄IC	100km/h	동탄IC영업소 (무정차시스템)
	2공구 STA.8+500 ~STA.18+000	9.50km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포곡동	서용인JCT 서용인IC 포곡IC	100km/h	포곡휴게소 (포곡IC 통합)
	3공구 STA.18+000 ~STA.31+192	13.19km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포곡동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중부고속도로)	도척IC 곤지암JCT	100km/h	노곡영업소 (무정차시스템)

-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도로의 구분		지방지역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선)	
설계 속도	본 선		• 100km/hr(4차로)
	연결로	JCT	• 40~60km/hr(1~2차로)
		IC	• 40~50km/hr(1~2차로)

- 도로폭원 구성

구 분	단위	본 선		연결로			
		일반구간	분리구간				
차로수		양방향 4차로	일방향 2차로	일방향 1(2)차로	양방향 2(4)차로		
도 로	총 폭 원	m	23.4	11.4	7.6(10.2)	14.7(21.9)	
	차 로 폭	m	4@3.6=14.4	2@3.6=7.2	3.6(7.2)	7.2(14.4)	
	중앙분리대	m	3.0	-	-	2.5	
폭 원	길어깨	좌 측	m	-	1.2	1.5	-
		우 측	m	2@3.0=6.0	3.0	2.5(1.5)	2@2.5=5.0
	측 대	좌 측	m	0.5	0.5	0.5	0.5
		우 측	m	0.5	0.5	0.5	0.5
성토부 보호길어깨		m	0.5	0.5	0.5	0.5	



(그림 1-1) 표준횡단면도

3) 주요 시설물계획

구 분		1공구	2공구	3공구	소 계
터 널	개소	6개소	2개소	5개소	13개소
	연장(m)	4,355	1,235	2,672	8,262
교 량	개소	13개소	12개소	9개소	34개소
	연장(m)	1,172	1,452	1,205	3,829
통로 BOX	개소	4개소	8개소	19개소	31개소
	연장(m)	66.7	461.82	1,058.99	1,587.51
수로 BOX	개소	5개소	6개소	15개소	26개소
	연장(m)	187.4	625.47	1,125.03	1,937.9
출입시설	개소	2개소	2개소	3개소	7개소
휴게소	개소	-	2개소	-	2개소
영업소	개소	1개소	4개소	2개소	7개소

주) 터널과 교량의 연장은 양평방향 기준임.

2.4.2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가. 사 업 명 :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라. 사업의 내용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0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였으며, 2011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을 약 79.91%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금번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으로 인해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형보전녹지 훼손이(▼19,901㎡) 발생하여 일부 노선통과 구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음.

1) 토지이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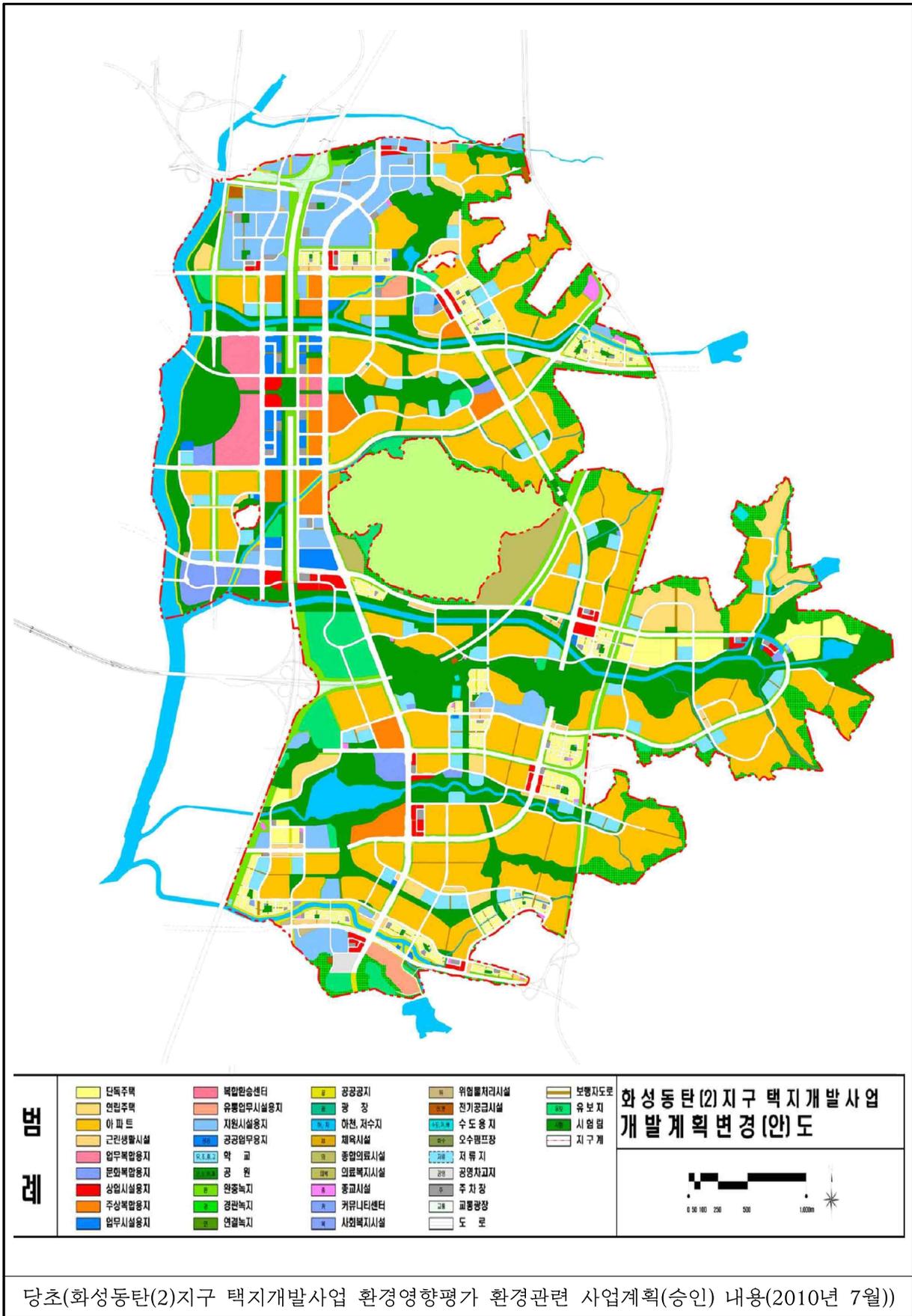
[표 1-1] 토지이용 계획표

구 분		면적(m ²)					
		당초(A)	변경1(B)	변경2(C)	금회(D)	증·감(D-C)	
총 계		24,014,896	24,014,896	24,014,896	24,014,896	-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7,296,429	7,651,299	7,663,036	7,663,036	-	
	단독주택	766,191	1,011,986	962,198	962,198	-	
	공동 주택	소 계	6,374,753	6,378,940	6,427,714	6,427,714	-
		연립주택	562,606	444,039	409,086	409,086	-
		아파트	5,812,147	5,934,901	6,018,628	6,018,628	-
	근린생활시설		155,485	260,373	273,124	273,124	-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16,718,467	16,363,597	16,351,860	16,351,860	-	
	소 계	1,400,780	1,110,004	1,093,977	1,093,977	-	
	상업 업무 용지	업무복합용지	287,917	49,494	49,494	49,494	-
		문화복합용지	213,490	86,787	91,099	91,099	-
		상업시설용지	234,727	351,803	358,360	358,360	-
		주상복합용지	500,218	528,586	460,458	460,458	-
		업무시설용지	126,483	93,334	134,566	134,566	-
		복합환승센터	37,945	-	-	-	-
		도시지원시설용지	1,206,688	1,298,452	1,295,917	1,295,917	-
	소 계	7,737,091	7,521,958	7,518,455	7,511,151	-7,304	
	공원 녹지	공 원	3,914,725	3,872,786	4,044,691	4,039,564	-5,127
		녹 지	2,410,646	1,911,890	1,881,652	1,879,475	-2,177
		공공공지	282,293	612,254	639,305	639,305	-
하 천		939,784	932,598	944,462	944,462	-	
저수지		186,961	184,085	-	-	-	
광 장		2,682	8,345	8,345	8,3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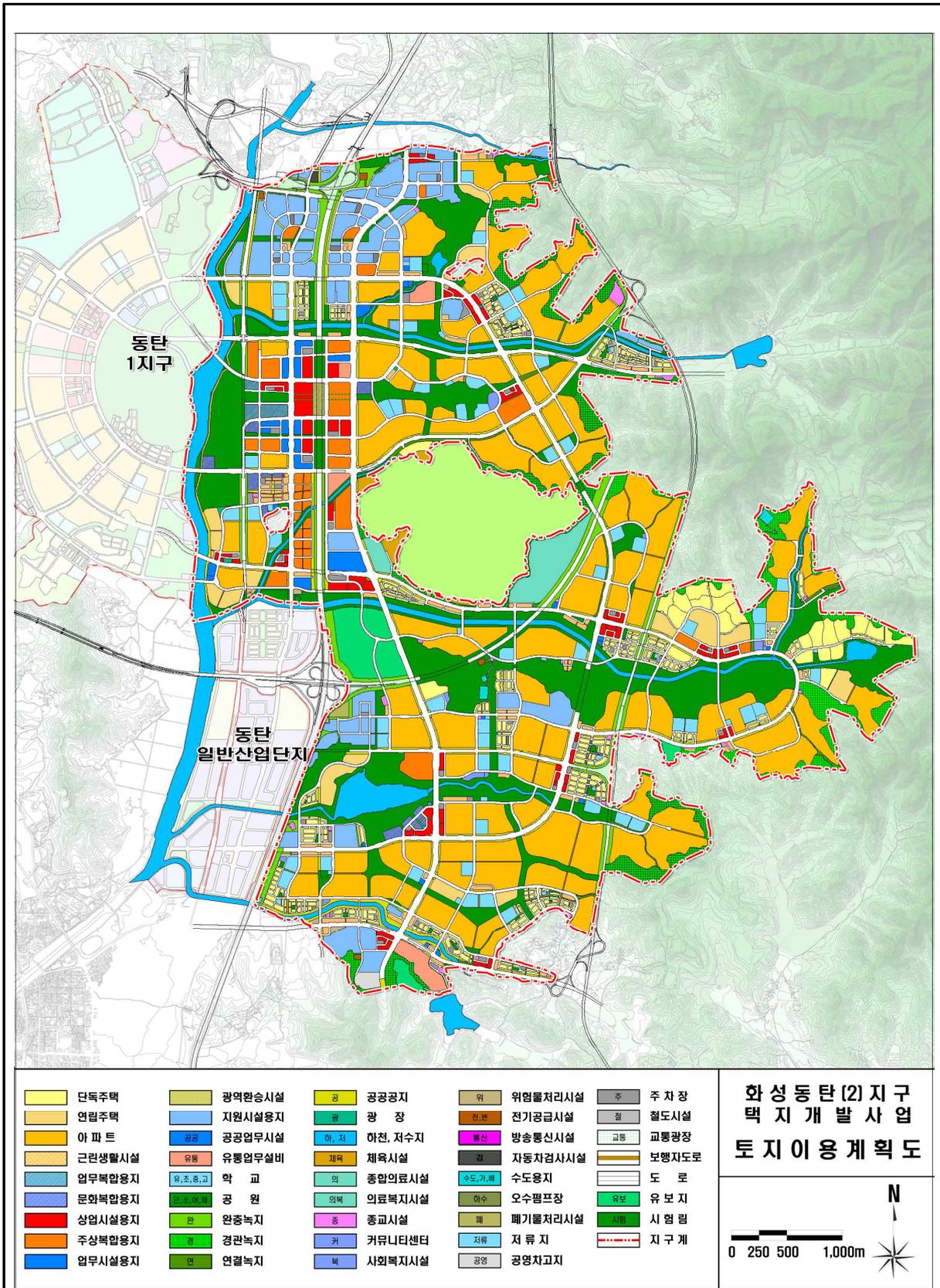
[표 계속]

구 분		면적(m ²)				
		당초(A)	변경1(B)	변경2(C)	금회(D)	증·감(D-C)
공공 시설 용지	공공업무시설	109,734	111,121	105,033	105,033	-
	유통업무설비	107,923	143,733	143,733	143,733	-
	학 교	659,446	707,607	712,478	712,478	-
	유치원	13,448	32,254	33,419	33,419	-
	사회복지시설	18,374	18,252	16,808	16,808	-
	커뮤니티센터	30,070	25,672	25,672	25,672	-
	체육시설	10,886	73,989	62,408	62,408	-
	종합의료시설	48,151	43,759	-	-	-
	의료시설	-	-	43,759	43,759	-
	의료복지시설	266,277	219,989	219,989	219,989	-
	종교시설	44,859	51,983	52,387	52,387	-
	전기공급시설	21,418	16,677	16,677	16,677	-
	방송통신시설	-	449	1,331	1,331	-
	자동차검사시설	-	5,620	5,612	5,612	-
	수도용지	37,470	37,548	37,848	37,848	-
	하수처리시설	1,044	308	308	308	-
	폐기물처리시설	-	15,136	15,136	15,136	-
	위험물처리시설	22,146	20,876	18,071	18,071	-
	공영차고지	28,511	28,756	28,756	28,756	-
	광역환승시설	-	29,673	29,673	29,673	-
	주차장	136,526	147,568	144,752	144,752	-
	교통광장	157,490	163,177	163,177	163,177	-
	도 로	3,977,149	4,170,800	4,198,248	4,205,552	7,304
	철도시설	-	3,648	3,648	3,648	-
	시험림	36,058	35,665	35,665	35,665	-
	저류지	1,448	1,448	1,448	1,448	-
유보지	645,480	327,475	327,475	327,475	-	

- 주) 1. 당초 :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 내용(2010년 07월)
 2. 변경1 :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3차) 협의내용 반영결과(2014년 10월)
 3. 변경2 : 화성동탄(2) 지구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8차)내용(201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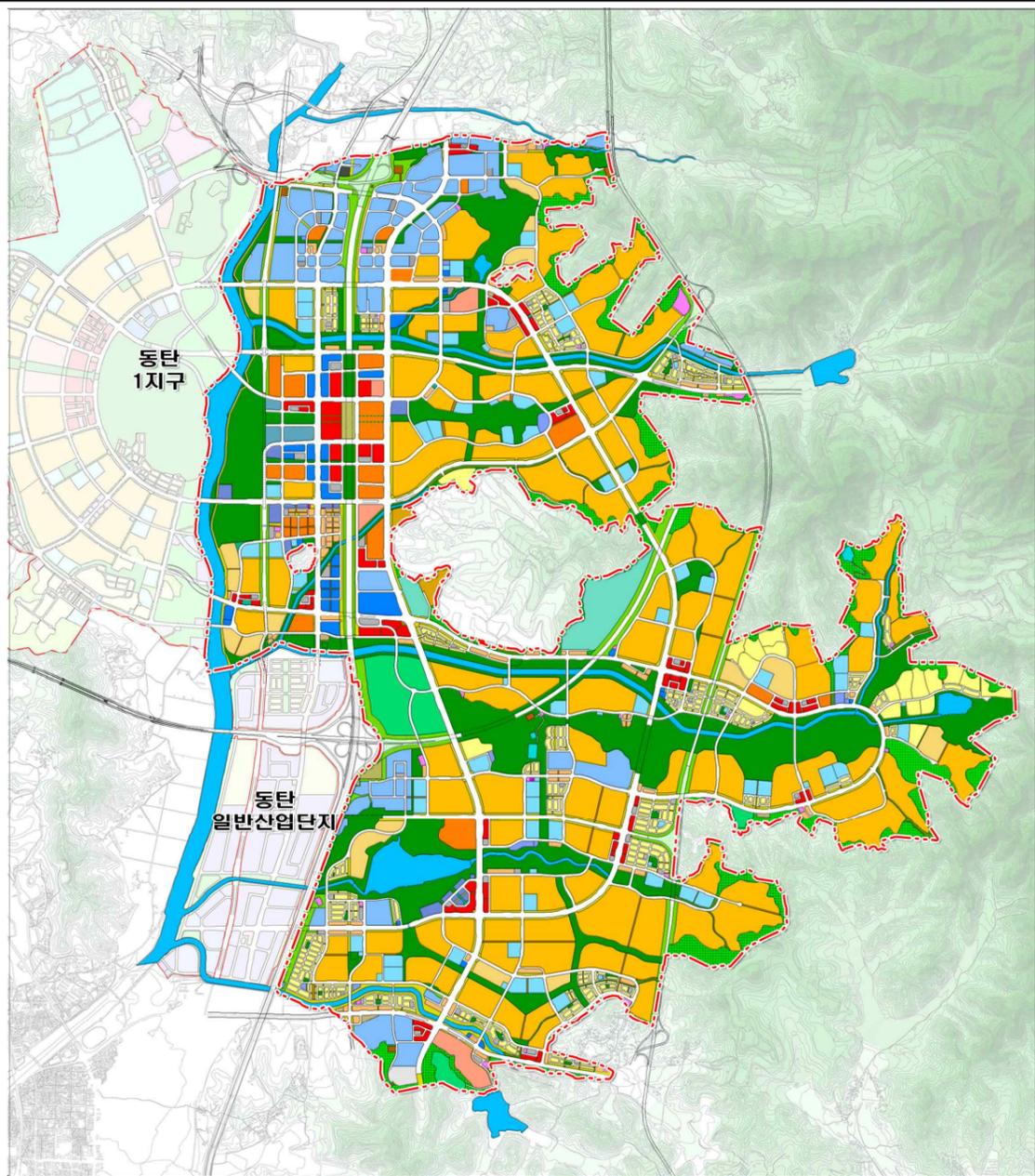


(그림 1-2) 토지이용 계획도(1/3)



변경1(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3차) 협의내용 반영결과(2014년 10월))

(그림 1-3) 토지이용 계획도(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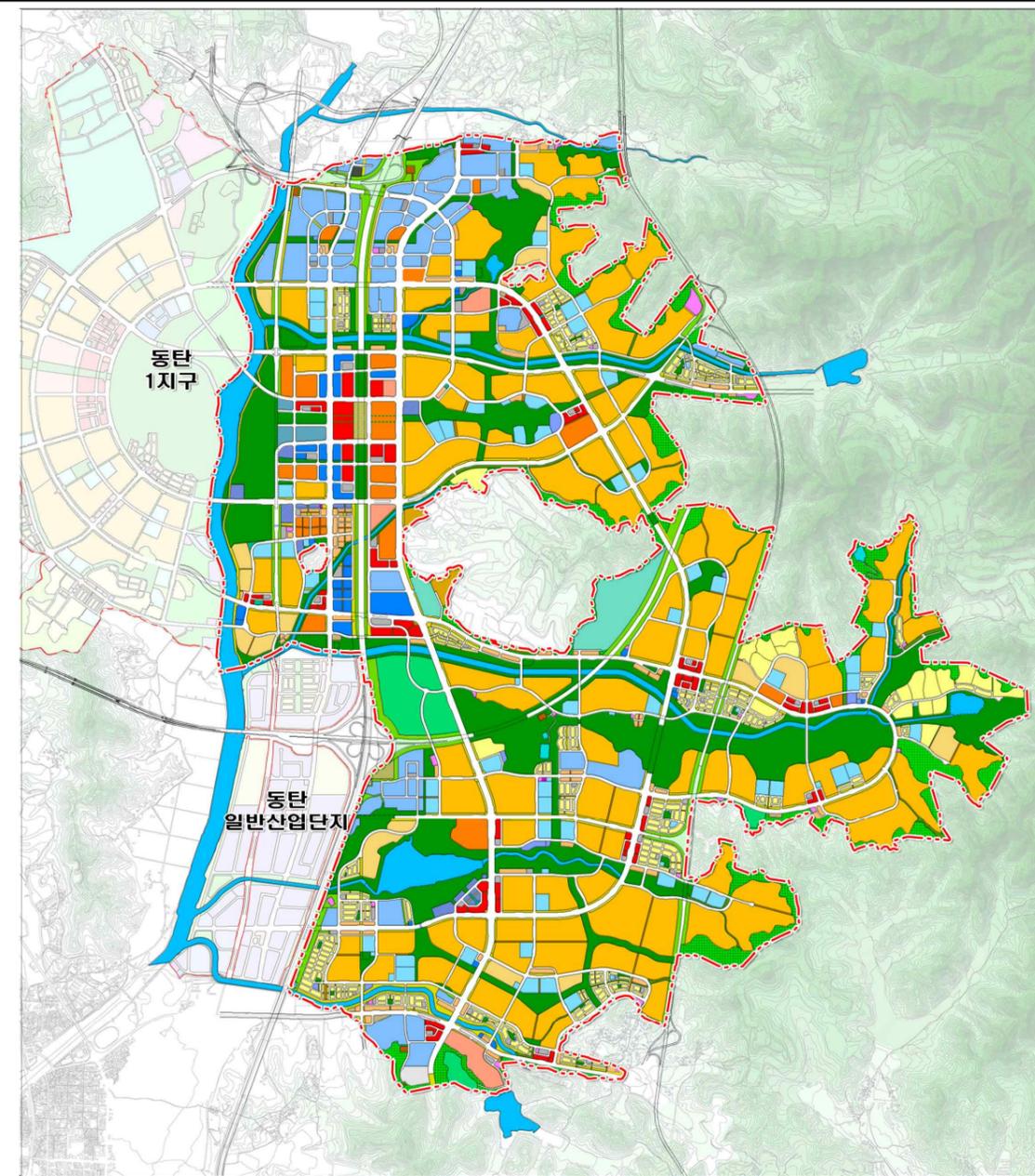
단독주택	광역환승시설	공공공지	위험물처리시설	주	주차장
연립주택	지원시설용지	광장	전기공급시설	철	철도시설
아파트	공공업무시설	하천,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교	교통광장
근린생활시설	유통업무시설비	체육시설	자동차검사시설	보	보행자도로
업무복합용지	유, 초, 중, 고	학교	수도, 개, 배	수	수도용지
문화복합용지	공	원	의	의	의료복지시설
상업시설용지	안	완	종	종	종교시설
주상복합용지	경	관	커	커	커뮤니티센터
업무시설용지	연	연	사	사	사회복지시설
			폐	폐	폐기물처리시설
			저	저	저류지
			경	경	경영차고지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0 250 500 1,000m

N

변경2(화성동탄(2) 지구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8차)(2015년 10월))



단독주택	광역환승시설	공공공지	위험물처리시설	주	주차장
연립주택	지원시설용지	광장	전기공급시설	철	철도시설
아파트	공공업무시설	하천,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교	교통광장
근린생활시설	유통업무시설비	체육시설	자동차검사시설	보	보행자도로
업무복합용지	유, 초, 중, 고	학교	수도, 개, 배	수	수도용지
문화복합용지	공	원	의	의	의료복지시설
상업시설용지	안	완	종	종	종교시설
주상복합용지	경	관	커	커	커뮤니티센터
업무시설용지	연	연	사	사	사회복지시설
			폐	폐	폐기물처리시설
			저	저	저류지
			경	경	경영차고지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0 250 500 1,000m

N

금회(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그림 1-4) 토지이용 계획도(3/3)

2) 인구 계획

- 수용인구는 285,878인으로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계획함.

[표 1-2] 인구 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당초(A)	변경(B)			금회(C)			증·감 (C-B)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278,533	285,878	68,504	217,374	285,878	68,504	217,374	-
단독주택	6,443	8,067	1,226	6,841	8,067	1,226	6,841	-
공동주택	234,587	250,826	65,428	185,398	250,826	65,428	185,398	-
주상복합	37,503	26,985	1,850	25,135	26,985	1,850	25,135	-

주) 1. 당초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 내용(2010년 07월)
 2. 변경 : 화성동탄(2)지구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내용(2015년 10월)

3) 주요 변경내용(원형보전 녹지)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터널 및 교량 계획으로 인해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형보전녹지 면적 19,091㎡가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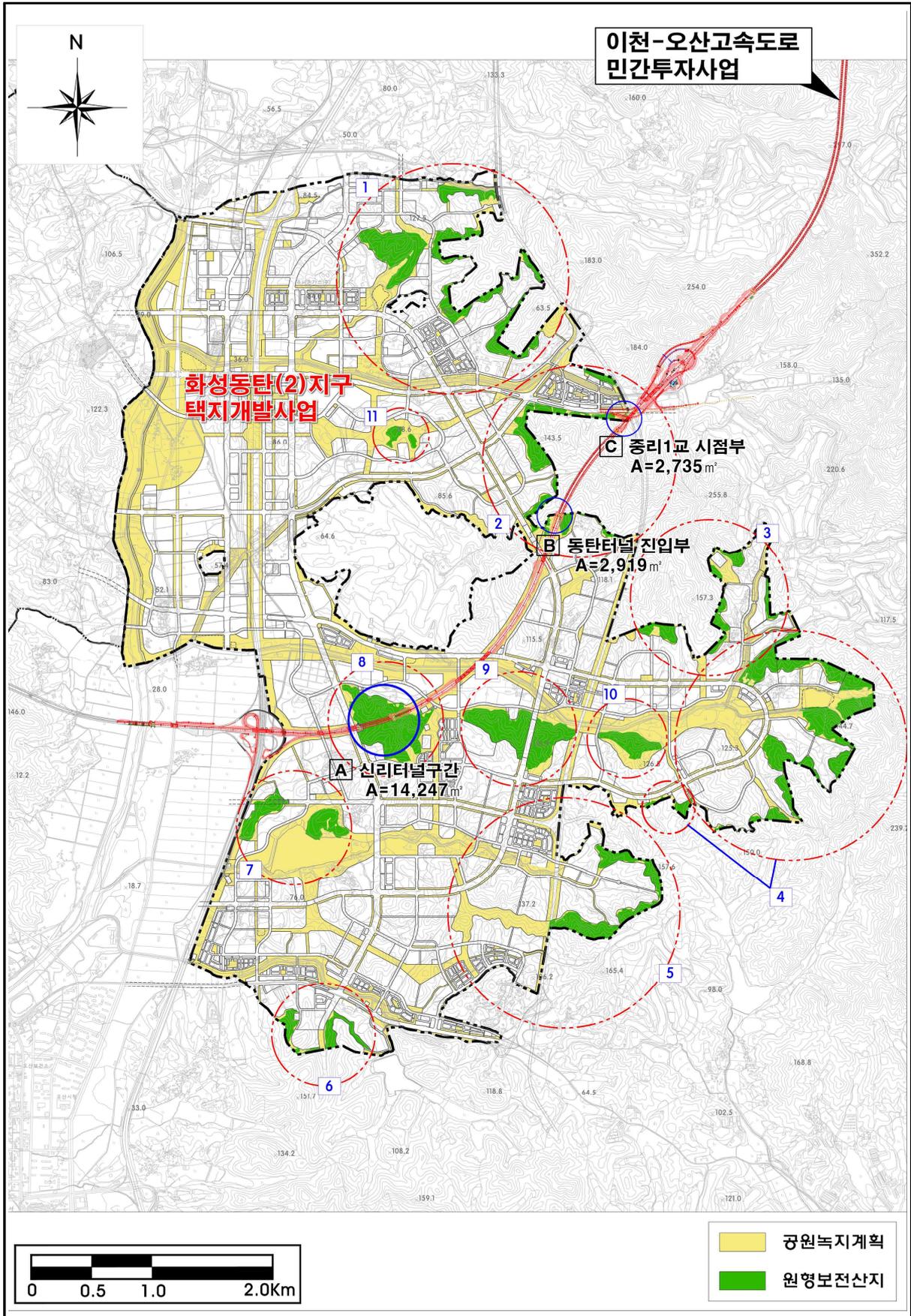
[표 1-3] 원형보전 녹지

구 분		당초(A)	변경(B)	금회(C)	증·감(C-A)	증·감(C-B)
원형보	면적(㎡)	1,741,299	1,654,496	1,634,595	▽ 106,704㎡	▽ 19,901㎡
전녹지	구성비(%)	7.3	6.9	6.8	▽ 0.5%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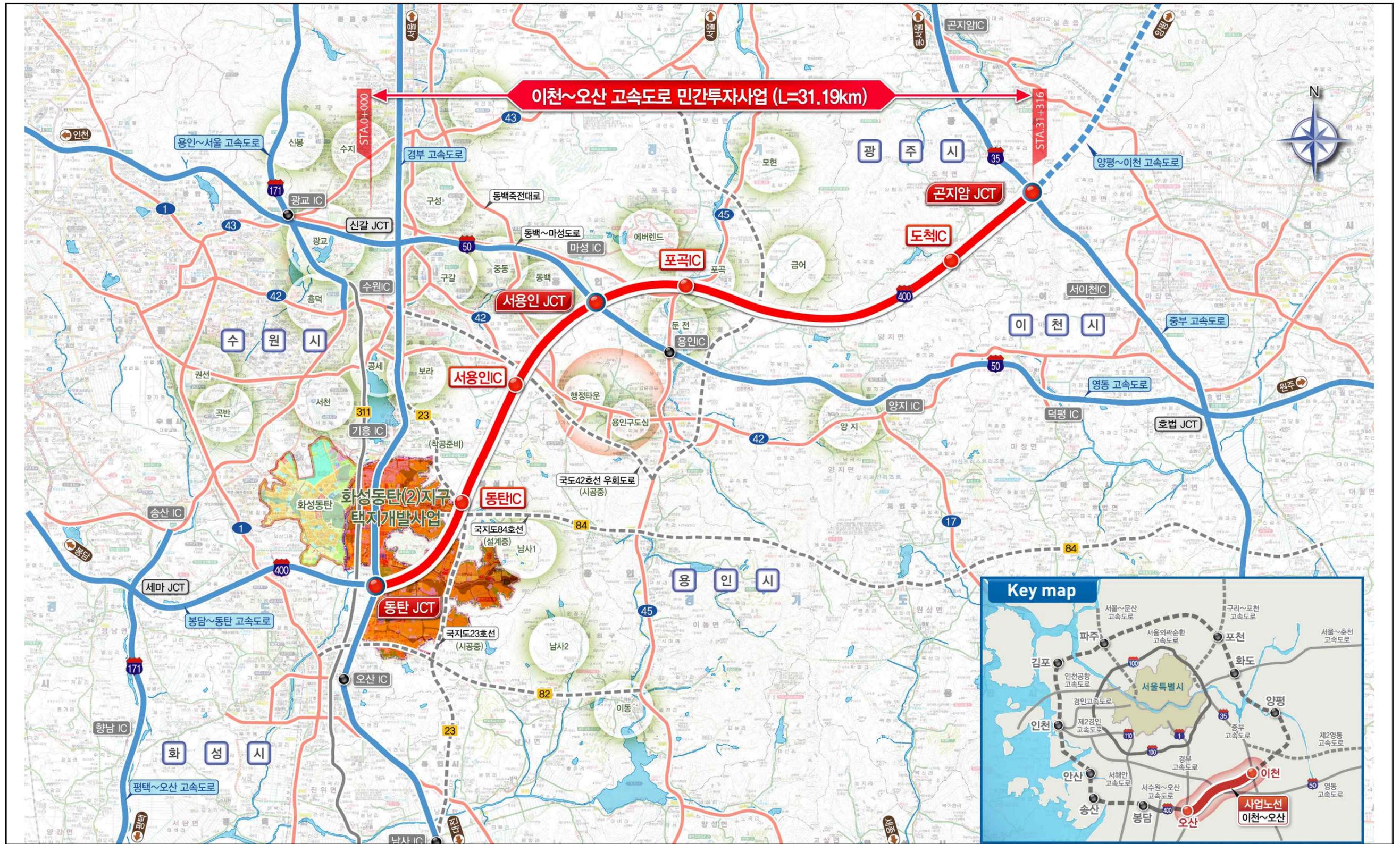
주) 1. 당초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 내용(2010년 07월)
 2. 변경 : 화성동탄(2)지구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내용(2015년 10월)

[표 1-4] 원형보전 녹지 훼손면적

구 분	원형보전녹지 면적(㎡)				원형보전녹지 훼손면적(㎡)		
	당 초	변 경	금 회	변 경	금 회		
					도로, 교량	사 면	소 계
합 계	1,741,299	1,654,496	1,634,595	86,803	7,304	12,597	19,901
1	314,795	314,403	314,403	392	-	-	-
2	132,941	129,076	123,422	3,865	2,177	3,477	5,654(B+C)
3	90,081	76,148	76,148	13,933	-	-	-
4	377,224	341,753	341,753	35,471	-	-	-
5	140,982	139,114	139,114	1,868	-	-	-
6	59,457	57,550	57,550	1,907	-	-	-
7	108,648	107,900	107,900	748	-	-	-
8	234,411	205,801	191,554	28,610	5,127	9,120	14,247(A)
9	205,654	205,654	205,654	-	-	-	-
10	57,534	57,525	57,525	9	-	-	-
11	19,572	19,572	19,572	-	-	-	-



(그림 1-5) 금회 원형보전녹지 훼손구간



(그림 1-6) 위치도

1.2 사업의 기대효과

1.2.1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통행비용 절감효과
 - 통행거리 25km 단축, 통행시간 32분 단축, 통행속도 7km/h 증가로 통행비용 12,800 원/대 절감
- 주변 간선도로 통행여건 개선
 - 사업시행시 주변 간선도로 V/C 및 경부, 영동, 국도 42, 43호선 서비스 수준 개선
- 지역 거점도시간 접근성 향상
 - 사업시행시 주요 거점도시간 통행속도 증대로 접근성 향상

1.2.2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을 통한 주택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 창출 및 경제적·합리적 주택개발사업의 수행 및 도시정비에 기여
-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을 고려한 생활권 형성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1 관계기관 의견수렴

2.1.1 의견수렴 개요

- 주관행정기관 : 화성시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일

구 분	공람기간	공람장소
화성시	2015.10.28(수) ~ 2015.11.26(목) (30일간)	화성시청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화성시청(도로과), 동탄면사무소, 동탄 4동사무소
용인시		용인시청(환경과), 이동면사무소, 삼가동사무소, 기흥동사무소, 지곡동사무소, 포곡읍사무소, 유방동사무소, 양지면사무소
광주시		광주시청(환경관리과), 도척면사무소

-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2.1.2 주민설명회 개최

- 신문공고 : 초안공람에 포함하여 공고(화성시공고 2015-3017호)
- 일시 및 장소

구 분	개최일시	장 소	비 고
화성시	11월 4일(수) 오전 11:00시	청려수련원 강당(1층)	
용인시	11월 5일(목) 오전 11:00시	용인시청 시민예식장(3층)	
광주시	11월 5일(목) 오후 16:00시	도척면사무소 대회의실(2층)	

2.1.3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접수

○ 초안의견 접수현황

구 분	의견제출자	비 고
관계기관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지역주민	황**외 1,344명	

6.1.4 주민의견 수렴 관련자료

○ 초안공람, 설명회 관련 신문공고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제21035호 | hkilbo | hankookilbo

화성시 공고 제 2015 - 3017 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제철의)」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연 장 : L=31.16km, B=23.4m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 면 적 : 24,014,89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 10. 28(수) ~ 2015. 11. 26(목) (30일간)
나. 공람장소

구 분	공 람 장 소
화성시	화성시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화성시청(도모과), 동탄면사무소, 동탄4동사무소
용인시	용인시청(환경과), 이동면사무소, 삼기동사무소, 기흥동사무소, 지곡동사무소, 포곡읍사무소, 유방동사무소, 양지면사무소
광주시	광주시청(환경관리과), 도척면사무소

3.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화성시	2015년 11월 4일(수) 11시	정리수련원 강당(1층)
용인시	2015년 11월 5일(목) 11시	용인시청 시민예시장(3층)
광주시	2015년 11월 5일(목) 16시	도척면사무소 대회의실(2층)

4.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문 의 처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031-426-865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056-922-3744

경인일보 제21608호 | 오피니언 |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13

화성시 공고 제 2015 - 3017 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제철의)」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연 장 : L=31.16km, B=23.4m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 면 적 : 24,014,89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 10. 28(수) ~ 2015. 11. 26(목) (30일간)
나. 공람장소

구 분	공 람 장 소
화성시	화성시 환경사업소(환경과), 화성시청(도모과), 동탄면사무소, 동탄4동사무소
용인시	용인시청(환경과), 이동면사무소, 삼기동사무소, 기흥동사무소, 지곡동사무소, 포곡읍사무소, 유방동사무소, 양지면사무소
광주시	광주시청(환경관리과), 도척면사무소

3.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화성시	2015년 11월 4일(수) 11시	정리수련원 강당(1층)
용인시	2015년 11월 5일(목) 11시	용인시청 시민예시장(3층)
광주시	2015년 11월 5일(목) 16시	도척면사무소 대회의실(2층)

4.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문 의 처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031-426-865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056-922-3744

○ 설명회 개최 및 진행사진

- 화성시



화성시 청려수련원 강당(1층)

- 용인시



용인시청 시민예식장(3층)

- 광주시



도척면사무소 대회의실(2층)

< 용인시 >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경부고속도로 동탄JCT) 종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중부고속도로 군지암JCT) 주요 경유지 :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설명회일시	2015. 11. 05. 11:00	설명회장소	용인시청 시민예식장(지상3층)
주관행정기관	화성시	사업시행자	제이외래순환도로(주)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15년 11월 05일
 설명회 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 광주시 >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경부고속도로 동탄JCT) 종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중부고속도로 군지암JCT) 주요 경유지 :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설명회일시	2015. 11. 05. 16:00	설명회장소	도척면사무소 대회의실(지상1층)
주관행정기관	화성시	사업시행자	제이외래순환도로(주)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15년 11월 05일
 설명회 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경부고속도로 동탄JCT) 종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중부고속도로 군지암JCT) 주요 경유지 :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설명회일시	2015. 11. 05. 16:00	설명회장소	도척면사무소 대회의실(지상1층)
주관행정기관	화성시	사업시행자	제이외래순환도로(주)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15년 11월 05일
 설명회 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 1차 신문광고 >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제21090호 | hkilbo | hankookilbo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연 장 : L=31.16km, B=23.4m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 면 적 : 24,014.89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화성시	2016년 1월 13일 11:00시	화성시 중2리마을회관
용인시	2016년 1월 14일 11:00시	용인시청 시민예식장(3층)
광주시	2016년 1월 14일 16:00시	도척면사무소 대회의실(2층)

3. 의견진술자 추천서 제출처 및 기한

- 제출처 : 화성시청 기후환경과(031-369-6712)
- 제출기한 : 2016년 1월 7일(목) 까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031-426-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12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 오피니언 | 제21654호 경인일보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연 장 : L=31.16km, B=23.4m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 면 적 : 24,014.89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화성시	2016년 1월 13일 11:00시	화성시 중2리마을회관
용인시	2016년 1월 14일 11:00시	용인시청 시민예식장(3층)
광주시	2016년 1월 14일 16:00시	도척면사무소 대회의실(2층)

3. 의견진술자 추천서 제출처 및 기한

- 제출처 : 화성시청 기후환경과(031-369-6712)
- 제출기한 : 2016년 1월 7일(목) 까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031-426-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 2차 신문광고 >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제21120호 | hkilbo | hankookilbo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연 장 : L=31.16km, B=23.4m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 면 적 : 24,014.89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화성시	2016년 2월 23일 16:00시	화성시 정려수련원 강당(1층)
용인시	2016년 2월 23일 11:00시	용인시청 시민예식장(3층)

3. 의견진술자 추천서 제출처 및 기한

- 제출처 : 화성시청 기후환경과(031-369-6712)
- 제출기한 : 2016년 2월 16일(화) 까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031-426-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경인일보 제21680호 | 2016년 2월 5일 금요일 23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연 장 : L=31.16km, B=23.4m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 면 적 : 24,014.89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화성시	2016년 2월 23일 16:00시	화성시 정려수련원 강당(1층)
용인시	2016년 2월 23일 11:00시	용인시청 시민예식장(3층)

3. 의견진술자 추천서 제출처 및 기한

- 제출처 : 화성시청 기후환경과(031-369-6712)
- 제출기한 : 2016년 2월 16일(화) 까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031-426-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5일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 주민공청회 생략공고 >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 제21158호 | hkilbo | hankookilbo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생략공고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의거 주민공청회 생략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연 장 : L=31.16km, B=23.4m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 면 적 : 24,014,89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주민공청회 생략사유

- 관련법에 의거 주민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지역(화성시) 주민들의 개최 거부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의거 생략함

구분	일시	장소	무산사유
1차	2016년 1월 13일(수) 11:00시	화성시 송리 마을회관(2층)	계획하여 노선설정 등은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로 용역서 서명 및 사전출발 불가
2차	2016년 2월 23일(목) 16:00시	화성시 송리우편원 정실(1층)	주민들의 의사전통 방벽으로 개최무산

3. 설명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화성시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화성시청(도로과), 동탄면사무소, 동탄4동사무소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설명자료 게재
 - 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의견 제출기간 : 2016년 3월 25일~4월 5일 까지(12일간)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031-426-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경인일보 제21711호 | 오피니언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13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생략공고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의거 주민공청회 생략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연 장 : L=31.16km, B=23.4m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 면 적 : 24,014,89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주민공청회 생략사유

- 관련법에 의거 주민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화성시) 주민들의 개최 거부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의거 생략함

구분	일시	장소	무산사유
1차	2016년 1월 13일(수) 11:00시	화성시 송리 마을회관(2층)	계획하여 노선설정 등은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로 용역서 서명 및 사전출발 불가
2차	2016년 2월 23일(목) 16:00시	화성시 송리우편원 정실(1층)	주민들의 의사전통 방벽으로 개최무산

3. 설명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화성시 환경사업소(기후환경과), 화성시청(도로과), 동탄면사무소, 동탄4동사무소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설명자료 게재
- 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의견 제출기간 : 2016년 3월 25일~4월 5일 까지(12일간)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031-426-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 공청회 개최 및 진행사진

- 1차 공청회



- 2차 공청회



2.2 의견수렴 결과

2.2.1 관계기관 의견수렴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환경부	○본 사업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이천~오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으로 사업으로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함	○반영 - 의견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였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되, 영향예측 및 평가시 산정과정과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붙임의 “평가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반영 - 관련규정 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대상지역 인근에 대기질, 수질, 토양·지하수 등 국가운영 측정망이 존재할 경우 본 사업의 환경현황 측정자료와 비교·제시	○반영 - 대상지역 인근에 대기질, 수질, 토양, 지하수에 대한 국가운영 측정망의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범위 내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누적하여 평가하여야 함	○반영 - 환경영향평가범위 내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누적 평가를 실시함	
			- 환경신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환경생태계 건전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	- 실시설계에 환경기술의 적용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환경부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계획노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다른 환경훼손 및 환경악영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반영 - 주민의견 수렴시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안검토를 통해 최적인 선정	
			- 특히, 포곡IC 주변(둔전리, 삼계리 포곡고 및 공동주택) 및 동탄IC 교차로(중리마을) 등에 대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제시	○반영 - 포곡IC 주변 및 동탄IC 교차로 주변 등에 대해 환경영향 등 비교·검토하여 제시함	
			○계획노선으로 인해 기 환경영향평가협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추후반영 - 계획노선으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등이 수반되는 화성상록CC 및 용인시민체육공원의 경우 사업자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동·식물상	환경부	○계획노선 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금회 고속도로 조성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원형보전녹지가 23,013 m ²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2-17쪽), 감소하는 원형보전녹지 현황 및 위치, 구간별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 금회 고속도로 조성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원형보전녹지 감소지역에 대한 현황 및 위치, 구간별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본 계획노선으로 감소하는 원형보전녹지 현황과 원형보전녹지 훼손규모 축소방안에 대한 대안 비교 결과와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화성동탄(2)신도시 및 화성상록CC 원형보전지 통과구간의 경우 노선계획이 고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구간을 최소화 하였으며, 용인시민체육공원의 경우 일부구간 상부복개를 통해 추가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임	
			- 계획노선 변경에 따른 원형보전지역의 추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훼손되는 녹지에 대해서는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동·식물상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군락 이식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도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식물군락을 이식하기 위해 4층 구조로 형성된 군락(상수리, 굴참나무 등)은 식생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층별 이식가능 수목을 선정하여 표토와 함께 군락이 형성되도록 이식계획을 수립하되, 조경계획과 별도로 이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식물군락 중, 현지조사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각 층별 이식가능 수목을 선정하여, 표토와 함께 군락이 형성되도록 정이식지역, 생태통로 및 휴게소 등에 이식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이 현재 터널계획 외에 산지를 단절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추가로 단절할 수 있으므로(예, Sta. 13.000-15.000, Sta. 19.000 인근 등) 터널연장 및 추가 터널설치의 가능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를 단절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추가로 단절할 수 있는 대절토 구간에 대해 터널설치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보호종 분포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현지조사된 법정보호종의 분포 및 위치를 조사시기별로 도면에 표시(계획노선 주변일 경우 확대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현지조사된 법정보호종의 분포 및 위치를 조사시기별로 도면에 표시하여 반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통로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통로 설치예정지역의 동물상 분포를 조사시기별로 확대지도에 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통로 설치예정지역의 동물상 분포를 도면에 표기하였으며, 생태통로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선정된 근거를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통로 설치지점을 7곳으로 선정한 근거를 제시하되, 생태통로 설치 지점 및 통로유형 선정시 서식동물의 특성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기질	환경부	○ 누적평가 - 계획노선 인근에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누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반영 -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함	
			○ 터널 운영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본 계획노선 31.16km 중 총 10개의 터널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터널의 제원을 명시하고 터널 입·출구 인근의 주거시설 현황을 조사·제시하여야 함	○ 반영 - 터널의 제원 및 주변 주거시설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함	
			- 각 터널의 길이와 특징에 따라 적용한 모델링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시도로 이용에 따른 가중농도와 별도로 터널이용에 의한 가중 농도를 명시하여야 함	- 각 터널의 길이와 특징에 따라 적용한 모델링을 명시하였고, 그결과 가중농도와 별도로 명시함	
			- 터널 운영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 주거시설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터널 운영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 주거시설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환기계획을 수립함	
			○ 공사시 터널 환기시설 - 공사시 작업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터널 내 환기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반영 - 공사시 터널 환기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수 질	환경부	○ 수질조사 - 공사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의 구획을 제시)의 상하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조사지점의 위치도(W1-W12, 235-239 쪽)에 강우 흐름을 가독성 있게 표기하여야 함	○ 반영 - 공사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의 상하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계도 및 수질조사지점 위치도에 강우 흐름을 표기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수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지와 금회 평가시의 수질분석에 따르면 많은 지점에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예 : 치동천 (W-3) BOD 0.9(전략)→9.4(금회)mg/L, T-P 0.162(전략)→0.758(금회)mg/L)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조사일의 강우 여부 등)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동천의 경우 주변 오염원현황으로 식당,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지와 금회 평가시의 수질 분석결과 차이는 상류 중리저수지 방류유량(계절적요인) 변화에 따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사유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토사유출량 산정은 365일(6-260쪽)로 나누지 말고 지역의 중장기(10-30년) 평균 강우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유출량 예측은 30년빈도, 지속시간 24시간 강우침식인자(R)을 이용한 RUSLE 방법을(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유출량산정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류수 수질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중 수질보전지역(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설치되는 침사지를 대상으로 부유물질 방류수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질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광주시 및 용인시 7개소) 방류수도 주변 수질상태를 감안하여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사지의 부유물질 방류수 목표기준을 SS 25mg/L로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함 - 영업소 및 휴게소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의 방류목표 농도를 BOD 20mg/L에서 10mg/L로 수질기준을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수공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현장 사무소 등, 6-262쪽) 및 운영시(휴게소 등 6-275쪽) 산정된 용수량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무소, 영업소 및 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지하수개발을 통해 확보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련 「지하수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 및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행할 계획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수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오염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오염총량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2013.5.9)」 제 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화성시, 용인시 및 광주시 등)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동 방침 제 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시행청(화성시, 용인시 및 광주시 등)으로 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음 -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전 토지계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시 오류(“기타” 지목에 대한 세부지목 제시 누락 등)가 있으므로 재산정 · 검토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제시 · 사업시행 후 생활계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에 오류(화성시, 중리(본선) 영업소 산정 누락 등)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산정·제시 · 사업시행 후 사업부지 내 설치예정인 개인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설치위치도 등) 제시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 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44호, 2015. 7.31.)」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내역(도면 등)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지목에 대한 세부지목 제시하고 재산정함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제시함 · 중리(본선) 영업소는 동탄IC영업소로 명칭 변경됨 ·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시함(평면도 제시) ·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내역(도면 등)을 제시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수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 사업 · 사업 준공예정년도 제시 · 사업시행 전·후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수질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4.5)」에 따라 산정·제시하였으나, 사업시행 전·후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이 누락되었으므로 동 지침에 따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 준공 예정년도 제시함(2016년 12월) · 사업시행 전·후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4.5」에 따라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시 수질보전지역의 지표수질/오·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에 대한 조사주기를 강화(최초 1년은 월1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반영 - 공사시 수질보전지역의 지표수질/오·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에 대한 조사주기는 최초 1년은 월1회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강우시 수질조사를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광주시 구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연 3회 이상, 용인시는 연 6회 이상 유입·방류·수질 및 유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수질 조사항목에 유량(대하천 제외)과 TOC를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수질 조사항목에 유량(대하천 제외)과 TOC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지하수 영향 평가 - 본 계획노선에 터널 10개소(총연장 7,345m)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지하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도한 지하수 유출이나 흐름 변화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 사용을 방해하거나 지반 안정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저감대책 및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터널 지하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지하수 유출이나 흐름 변화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 사용을 방해하거나 지반 안정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저감대책 및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 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수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 설치로 인한 인근 지하수위 강하량, 범위 및 회복 시기 등을 예측하고 영향 범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관정에 대해 계절변화나 강우에 의한 자연적 변화의 범위를 크게(5-10배) 상회하는 수위 강화가 예측될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체 관정 개발 등의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수공사 후 터널 갱구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하수위가 회복되어 6개월 경과 이후에는 안정수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정기적으로 지하수위 변화를 측정하여 터널 굴착에 따른 영향여부를 파악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 상부 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지하수 유동에 따른 오염원 확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저감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물질 확산 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 인근 하천, 호소, 습지 등의 지표수원을 조사하고 지하수 유출에 의한 수위 강하가 예상될 때는 유지수량 확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수공사 후 터널 갱구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하수위가 회복되어 6개월 경과 이후에는 안정수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별 지하수유출량의 일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와 재활용 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 구간별 지하수유출량 및 재활용 현황을 일별 조사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생활용수 공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및 휴게소 운영시 필요한 용수를 지하수개발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므로 인근 지하수이용현황과 잔여 개발가능량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및 휴게소 인근 지하수이용 현황과 잔여 개발가능량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계획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토 양	환경부	<p>○ 표토(비옥토)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옥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발생예정인 비옥토가 전량 적절히 운반·보관 및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장기간의 공사기간, 발생 시기,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으로 유실을 최소화 · 적정 사용여부(재활용률, 재활용 세부내용 등)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p>※ 표토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발사업과 표토자원 관리(환경포럼 Vol. 19. No.5, 2015, KEI)'를 참조</p>	<p>○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비옥토에 대해 전량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반 및 보관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으로 유실을 최소화 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시 비옥토의 적정 사용여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 	
	지형 · 지질		<p>○ 부족토(10,067,465m³)는 인근 토취장(토취장 4개소, 석산 6개소) 등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인 바, 공사시기,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되, 토취장 등 개발시 동 사업과 별도로 개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취장 및 석산개발 시 2차 환경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토취장 등을 활용하거나 사용 후 복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p>○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사토구간으로 외부 반입토 없이 각 공구내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토취장 등 개발시 동 사업과 별도로 개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음 - 우선적으로 기 운영 중인 공사현장에 재활용할 계획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지형 · 지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변화 현황과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지형변화 현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표와 도면으로 작성하고 사면고 30m 이상의 절토구간에 대해서는 지형훼손을 저감하는 방안(터널화, 종단구배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20m 이상의 성토구간에 대하여 교량화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m이상 깎기사면고와 쌓기고 및 15m이상 쌓기사면고 대하여 표와 도면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사면안정검토를 통한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 · 주요 절·성토 구간의 지형변화를 표로 작성하고 절·성토고와 사면고를 구분하여 각각 표기하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시·종점부와 교량부를 포함하여 주요 절·성토 구간의 지형변화를 표로 작성하고 절·성토고와 사면고를 구분하여 각각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시·종점부와 교량부를 포함하여 절·성토 구간의 횡단면도를 작성(30m 이상의 사면고 발생지역)하고 절·성토 사면고를 표시하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시·종점부와 교량부를 포함하여 절·성토 구간의 횡단면도를 작성(30m 이상의 사면고 발생지역은 모두 포함)하고 절·성토 사면고를 반드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형형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노선도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형형상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노선도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작성 ※ 평면도는 축척 1:10,000 내외의 한 장으로 연결된 도면으로 작성하고 주요 절·성토 구간은 횡단면선을 표시 및 도면 주변에 횡단면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형형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노선도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별첨으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 현황 및 영향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주변으로 광업권이 등록된 광산 총29개소가 조사되었고 이들 광산 중에는 금은광산을 포함하여 중금속 광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광산 및 광구에 대한 상세한 현황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이 제시되지 않은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노선 주변 및 인근의 광구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지형 · 지질	환경부	· 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하는 광구 및 광산에 대해 등록현황, 이격거리, 가행 여부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	· 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하는 광구 및 광산에 대해 등록현황, 이격거리, 가행 여부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함	
			·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광구는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보상후 감소처분 신청할 계획이며, 이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함	
			○ 한남정맥 보전방안 - 계획노선은 한남정맥을 통과하고 있음. 비록 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나 터널 입출구부에서 핵심구역에 대한 상당한 훼손이 수반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산줄기를 따라 노선이 계획되면서 연속적인 대규모 절토사면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지형훼손이 우려되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한남정맥 현황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부분반영 - 무봉산2터널 구간의 NATM 위치조정 및 사면보강공법을 통해 한남정맥 핵심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였으며, 완충구역에 대한 상세조사를 통하여 분포구간을 표시함.	
			· 핵심구역을 통과하는 터널(무봉산2터널)에 대해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터널연장, 계획고 및 종단구배 조정 등)을 검토		
			· 한남정맥의 핵심구간에 대해서만 표시하고 있으나 상세조사를 통하여 완충구역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분포구간을 표시		
			· 한남정맥의 완충구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 검토 ※ 정맥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설정 및 보전방안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 평가가이드라인(환경부, 2009)」을 참조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지형 · 지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서용인JCT 인근 톨게이트)가 산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형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타입지 대안 검토)을 검토(지형변화를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상세도면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시 무정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업소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에스피아 전원주택단지 인근에 계획된 영업소는 최대한 주택단지와 이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 및 교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터널 대부분의 입·출구 및 주변 산지에서 지형훼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터널연장, 선형조정, 심도조정(계획고 및 종단경사 조정 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의 갱문위치 및 형식검토를 통해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간(서용인JCT-포곡IC 사이구간, 경안천 인근 농경지 통과구간)에 대해서는 지역단절, 조망차단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교량설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용인JCT~포곡IC 구간 중 영문교 구간은 일부 선형을 조정하여 농경지 편입면적을 최소화하였으며, - 경안천교 인근 농업진흥지역 구간은 통로암거와 부체도로 연결을 통해 주민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행정지역 통과구간은 포곡2교 교량연장을 확대하여 조망권을 확보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의 터널, 교량 등의 구조물설치에 따른 지형단절지수를 0.599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 지역의 신설고속도로 및 타 지역의 신설고속도로와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의 터널, 교량 등의 구조물설치에 따른 지형단절지수를 다른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지형 · 지질	환경부	<p>○ 지형변화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에 따른 지형변화 지수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계획노선으로 인한 지형변화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지형변화지수 = 총토공량(m³)/사업면적(m²) · 선형사업 지형변화지수 = [총토공량(m³)/[도로연장(m) × 도로폭원(m)] · 선형사업 유효지형변화지수 = [총토공량(m³) - 터널암버력발생량(m³)/[도로연장(m) - 터널연장(m) × 도로폭원(m)] · 수도권 지역의 신설 고속도로 혹은 계획중인 고속도로의 지형변화지수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을 평가 	<p>○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변화지수를 산정하여 사업노선에 대한 지형변화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제시함 · 유사사업 고속도로와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제시함 	
			<p>○ 부수적 지형개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공사용 진입도로, 현장사무소, 부채도로 등 현황(작업 목록과 도면)과 이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을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지형개변으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p>○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 진입도로, 현장사무소, 부채도로 등 이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을 작성·제시하였으며, 지형개변으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및 활용방안을 수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주변에 암버력 임시적치장 계획이 있는 경우 활용계획을 제시(주변 현황 및 위치, 규모, 식생 현황 등)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p>○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터널주변 약 100m 이내에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임시적치장을 계획하겠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지형 · 지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토 공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족토에 대한 공급계획을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인근지역 공사장의 사토를 활용할 경우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을 이용한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토사이동이 사업기간 중 가능하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 인근 사업장에 반출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위치, 사업명칭, 사업내용, 토공계획, 사업기간 확인 · 사업개시 여부를 확인 · 사토반입 관련자료(동의서, 허가서 등)를 작성 · 발생하는 암버력에 대한 처리 또는 활용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사토구간으로 외부 반입토 없이 각 공구내에서 처리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족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취장을 개발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토취장 입지로서의 적절성을 고려하고 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취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취장 예정지의 주변 지형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작성 및 토취장 위치(※ 관독이 가능하도록 작성) · 토취장의 면적, 용량, 녹지자연도 등 식생현황 · 토취장은 가능한 지형이 단절되어 연결성이 떨어지는 위치를 선정(※주요 산줄기의 능선에 영향이 없는 지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사토구간으로 외부 반입토 없이 각 공구내에서 처리할 계획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지형 · 지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를 평면상으로 절취하여 사면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 사면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절취계획과 사면안정 대책을 수립 · 토취 후 최종 지형형태 및 토취후 활용계획이나 복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 본 사업은 사토구간으로 외부 반입토 없이 각 공구내에서 처리할 계획임 	
	소음 · 진동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온시설 현황 - 사업 시행으로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문화재, 조수보호구역, 사육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정밀기기 운영 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도면(지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과 표를 사용하여 명확히 표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사업 시행으로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문화재, 조수보호구역, 사육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정밀기기 운영 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평면도 및 단면도와 표를 사용하여 명확히 표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파시 영향예측 - 발파로 인한 영향예측 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장 인근에 산재하는 충격성분이 강한 발파소음·진동에 민감한 시설물(사육시설, 문화재, 위험물 저장소, 정밀기기 사용 시설 등)의 용도 및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 · 각 시설물별로 허용이 가능한 한계 소음·진동도를 “환경분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 시행”(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년 1월 1일)을 참조하여 시설별로 설정(특히 사육시설) · 각 시설물별 한계소음·진동도를 고려하여 발파공법 결정 · 발파 예상지역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영향지역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발파영향예상지역을 제시하였으며, 각 시설물별 한계소음·진동도를 고려하여 발파공법 결정하여 발파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였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소음 · 진동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타시 공사구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항타로 인한 소음 진동 영향지역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구간과의 이격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통해 각 지점별 소음·진동도를 평가(공종별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및 대수의 산출근거 명기, 소음 및 진동 평가시 동일한 장비를 근거로 연계평가)하였으며, 공사시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도 환경목표기준에 근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가대책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공사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온시설별로 인근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진동 유발 공종과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고려하여 각 지점별 소음·진동도를 평가(공종별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및 대수의 산출근거 명기, 소음 및 진동 평가시 동일한 장비를 근거로 연계평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도 환경목표기준에 근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가대책(소음현황판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공사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예측식 및 예측인자의 적용 타당성에 대한 근거제시 없이 도로교통 소음도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목표연도까지 5년 간격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구간별 및 시간대(24시간)별 차량의 통행속도와 교통량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소속 및 참여자 등을 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 소음예측식에 대한 적용타당성을 제시하였으며, 목표연도(2041년)까지 5년 간격의 구간별 및 시간대별 차량의 통행속도와 교통량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하였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소음 · 진동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도의 시간대별 소음도 예측 ·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년도 및 시간대 선정 · 저감대책의 수립시기와 방법 선정(선정 근거 명기) · 각 정온시설의 층별 소음도 산출 · 계획노선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현황소음 및 소음예측 분포 등을 근거로 소음 기여도 산정 및 누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지점에 대한 년도별 시간대별 예측 소음도를 근거로 최대 예측소음도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선정하여 각 정온시설의 층별소음도를 산출하였으며, 주변 도로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에 대하여는 소음 기여도 산정 및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및 운영시 모니터링(예측결과 및 저감효과의 확인)을 통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는 정온시설이 있을 경우 추가대책의 수립(책임기관 선정)이 가능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간, 빈도 등의 근거 자료 명기)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는 정온시설이 있을 경우 추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간 등을 명기하였음 	
	위락 · 경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도로 노선을 따라 대부분 무봉산, 떡조산, 석성산 등 산림녹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다수의 정온시설구역(65개소) 및 대규모 절·성토사면(30m 이상의 대절토사면 16개소, 10m 이상의 고성토사면 17개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정온시설의 산림경관 조망에 대한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온시설에서의 산림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제시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위락 · 경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에서 제시한 경관종합도는 영향예상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경관영향분석을 위한 조망점 선정이 적절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경관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함 · 노선을 따라 가시설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녹지경관 구역 · 정온시설구역 · 대절토사면 구역 및 고성토사면 구역(사면높이 및 길이 정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종합도 작성시 노선을 따라 가시설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녹지경관 구역 및 정온시설 구역, 대절·성토 사면 구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경관종합도를 바탕으로 정온시설구역의 산림경관 조망이 예상되는 지점에 조망점을 선정하여 해당 사면의 자연경관영향에 대한 예비분석을 통한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온시설구역의 산림경관 조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을 수행함 	
	총괄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조사시 확인된 삶, 무쇠산죽제비, 새매, 새호리기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및 운영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서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시(공사시 및 운영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지속적인 출현을 파악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영향이 예상될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상 원형보전지를 일부 관통하여 터널공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 노선 구간에 대해 산지부 훼손을 최소화하고 발생 사면에 대한 우선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산지부 및 원형보전지의 훼손을 최소화도록 계획하였으며, 발생사면에 대해서는 우선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구 분	평가항목	의견제출자(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경기도	○ 교량공사에 따른 비점오염원 및 오수발생으로 주변 하천의 수질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에 반영	○ 반영 - 교량공사에 따른 비점오염원 및 오수발생으로 인한 주변 하천의 수질영향이 예상되므로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터널굴착으로 인한 주변 이용관정 등 지하수위에 영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터널폐수 처리계획 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처리시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2차적인 방안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 반영 - 터널굴착으로 인한 주변 이용관정 등 지하수위에 영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 - 터널폐수 처리계획 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며, 처리시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2차적인 방안을 수립 실시할 계획임	
			○ 터널공사 시 발파로 인한 굴착은 지반진동 및 소음과 같은 공해적 요소가 수반되므로 공사 출입구 부분에 방음문 등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정온시설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저감대책을 반영하여야 함	○ 반영 - 터널 공사시 발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기 위하여 지발당장 약량 조절 등 주변 정온시설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판넬 설치 시 조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한 판넬은 지양하여야 함	○ 추후반영 - 방음시설 설치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본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2차적인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추후반영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2차적인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경기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반영 -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음	
	총괄	화성시	○사업구간내 공사시 건설기계장비등 유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하천 하천구역내 토지 이용시 공사전 행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추후반영 - 사업구간내 공사시 건설기계장비등 유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방하천 하천구역내 토지 이용시 공사전 행정사항을 이행하겠음	
			○하천내 구조물 설치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준수 및 하천유지관리 또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추후반영 - 하천내 구조물 설치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준수 및 하천 유지관리 또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음	
			○사업구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저축이 될 경우 농경지 통행 및 농업용수 이용과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 제반여건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함	○추후반영 - 사업구간내 농업생산기반시설과의 저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저축이 발생할 경우 대체시설 및 제반여건을 수립 시행하겠음	
		○동탄 2지구와 중리IC(23호선)간 통행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니 왕복4차로를 6차로로 확장	○반영 - 국지도84호선 연결로 접속구간은 6차로로 계획하였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턴(봉담→용인, 양평→용인)은 불편하니 램프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탄IC위치와 형식은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주변 시설 및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동탄IC와 국지도84호선 용인방향 램프연결은 기존 조성된 지장물 저축으로 설치가 어려우며, 이용교통량이 85대/시로 U-turn 처리시 간선도로 서비스수준 "B~C", 엇갈림분석 결과 서비스수준 "B"로 교통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MP-E~RAMP-C 위빙발생→위빙구간 더 확장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mp-C, E 합류부와 영업소 이격거리는 차로 변경거리 설계기준 L=50m 이상인 L=90m로 계획하여 교통소통 측면에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MP-A, B 접속부~요금소 길이 짧으니 확장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mp-A, B 합류부와 영업소 이격거리는 설계속도 50km/h시 조도순응 및 인지반응, 차로변경거리 설계기준 L=147m 보다 이격시켰으며 당초 L=170m에서 설계VE시 L=190m로 추가 확보하였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지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준수하겠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운영시 도로소음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예상되는 바, 동탄2택지개발 사업지구 통과구간에 대하여 방음터널 설치계획 구간을 방음터널로 개선 조치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탄제(2)신도시 주변의 정온시설에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터널 등을 계획하였으며, 장대터널에 의한 위험성 및 환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구간에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방음벽 계획을 수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부지는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시 「수질오염총량기본방침(2013.5.9. 제1042호)」 제2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산정근거 포함)을 산정하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협의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로 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유출 등 수질오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원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침사지 등을 설치할 계획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내 구조물 설치시 지방 하천 하천기본계획 준수 및 하천유지관리 또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내 구조물 설치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준수 및 하천유지관리 또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으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생태단절에 의한 자연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하며 필요시 생태통로 설치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의 서식지간 이동을 돕고 사업노선 내 침입을 방지 및 탈출을 도와주기 위한 생태통로를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관련 매립폐기물 발생시 환경부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적법하게 처리 후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이 총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공사 착종전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p>○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등을 득한(할) 경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그 외 기타 사업장(공장 등)에서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람</p>	<p>○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p>	
			<p>○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제1항 규정에 따라 월 평균 50kg 이상의 폐기물(폐유기용제, 폐유,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등)을 배출할 경우, 월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폐석면 등)을 배출할 경우, 기타 오니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할 경우, 폐유독물,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변경)계획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람</p>	<p>○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p>	
			<p>○ 고속도로 시점부 동탄JCT 인접 폐1 부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중으로 공사 중 및 도로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p>	<p>○ 미반영 - 본 사업노선의 본선에서의 이격거리는 1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램프와의 사이에 완충녹지가 분포하고 있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p>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 해당 노선은 화성동탄(2)지구를 관통하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기관과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람	○ 반영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기관과 협의진행 중에 있음	
			○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착공 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반영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을 통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동 사업에 투입되는 공사용 차량의 통행(가설)도로는 일반 차량 이용도로와 분리하여 계획하여 주시기 바람, 착공 전 이에 대하여 우리 시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람	○ 추후반영 - 공사차량 통행도로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겠으며, 착공 전 사전협의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과 주민의의견과 같이 동탄(2)지구를 관통하는 구간은 방음벽 및 반방음터널이 아닌 양방향 전 구간(차선) 방음터널로 시공하시기 바람. 특히, 「(그림 6.5.2-9)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통과구간 방음시설 설치계획의 '1+000'」 구간은 문화시설 등의 유보용지와 면해 있으므로 해당 구간은 반드시 방음터널(現 반방음터널 및 방음벽 계획)로 시공하여야 함	○ 미반영 - 동탄제(2)신도시 주변의 정온시설에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터널 등을 계획하였으며, 장대터널에 의한 위험성 및 환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에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방음벽 계획을 수립함 - 유보지의 경우 해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 방음시설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향후 계획수립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음시설 계획을 수립할 것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p>○ 동 사업장은 대형특별관리 공사장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14 및 별표15]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까지 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은 주민피해는 물론 인근 도로가 토사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로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장 주변에는 필히 인력을 배치하여 자동식세륜시설, 고압살수기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살수차 및 진공노면청소차를 고정 배치하여 도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항시 유지할 것 임</p>	<p>○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p>	
			<p>○ 또한, 방음벽(방진벽)시설은 방음방진효과가 높고 견고하며 깨끗한 재질로 설치한 후에 방진벽(방음벽)면에는 가급적 화성시를 상징하는 로고 등을 넣어 미관을 보기 좋게 설치하여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항에 따른 특정공사사전신고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지 첨부하여 동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으며, 방음벽 시설은 미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p>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p>○ 동 공사장 방음벽은 내부에는 흡음효과가 있는 흡음방음벽을 설치함은 물론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 사용 등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내지 공법으로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파일설치를 위한 작업은 항타기대신 필히 오거작업 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p>	<p>○ 반영 - 공사시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투입할 것이며, 파일설치를 위한 작업은 오거작업 등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음</p>	
			<p>○ 공사장 내부에 (공사장 방음벽에)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고정식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사업장 내부에 동소음측정기에서 측정되는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운용하여 공사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실시간 관리하시기 바라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는 반듯이 생활소음규제기준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p>○ 부분반영 - 사후영향조사를 통해 소음 등의 영향에 대해 관리토록 할 것이며, 생활소음규제기준 이내가 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p>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공사변경신고를 사전에 필하시기 바랍니다.</p>	<p>○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p>	
			<p>○ 아파트 설계시 주변도로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미반영 - 본 사업과 관련없음</p>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유지기준 연1회, 권고지수 2년 1회)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부지내의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항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11조에 따른 기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구역일 경우 : 하수과 협의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 처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규정 및 환경부고시 제2013-6호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을 선정하시어 발생량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건축허가(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축물공사 착공 전에 필하시고 사전검사 및 사용 전 준공검사를 득하신 후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악취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영(가동)하시고 악취 발생으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안전을 기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하다) 이상 배출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람, 판매시설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부지 내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규모의 폐기물 분리배출 장소 확보 및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의견수렴	총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노선의 기본계획으로 노선 및 역사의 정확한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공사 지역 및 피해지역이 가변적이므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주민들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환경피해 및 한남정맥 지형축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실시설계 노선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한남정맥 지형축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수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대상지역은 초안에 제시된 범위로 진행하되, 공사 진행시 차량운행 노선에 따라 대기질 및 소음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평가대상지역을 확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대상지역은 초안에 제시된 범위로 진행하였으며,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는 정확한 자료 사용이 요구되며 부족하거나 잘못된 자료사용은 자료수집의 부족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노선이 8개시·군에 걸쳐 경유하므로 타 시에 대한 지역개황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P4-9)에 용인시(처인구 남사면 일원)자료가 없는 것으로 기재 - 보호수(P6-20, 표6-1-1-10, 보호수④ 수종 : 느티나무)에 대한 자료확인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1개소가 사업노선 하류에 위치하며, 용인구간(STA.17+400)에서 약 17km 이격, 광주구간(STA.28+500)에서 약 31.9km 이격 - 은행나무로 오기 수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단계별 환경영향요소를 선정 시 생활환경과 직접 관련된 사항(대기, 소음)은 추가 고려하여야 함 - 수목 벌채 시 기계톱 사용으로 인한 단발적인 소음(P5-25, 표5.4-3)도 사업장 주변시설에 피해여부를 추가 고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비의 경우 소음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토공사를 기준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경유지역의 많은 부분이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이므로 공사를 위한 진입로, 노선 확보 등 공사 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수목대비 10%이상 이식하여야 함 - 이식수목은 수목으로서 가치가 높고 활착력이 좋은 품종 및 고유수목(은사시 및 능수버들 등)대상으로 하며 훼손수목은 최대한 재이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사업시행시 훼손되는 이식수목에 대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며,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이식수목에 대하여 훼손수목대비 10%이상으로 계획하여 이식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원형보전녹지 구간의 훼손이 최소화 및 산림밀도를 고려하여 노선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반영 - 용인시의 의견을 반영한 투척경기장 면적확보 등의 사유로 일부 노선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원형지 훼손 일부 구간에 대해 박스(310m)를 설치하여 복개한 후 상부수목식재로 대체녹지확보를 계획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 시 확인된 보호종(삿, 금개구리, 원앙, 황조롱이 등)의 산란기 등의 시기에는 사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공사 시행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야생생물의 서식지간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는 한남정맥 관통지역에 산림밀도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사업시행시 단계적인 공사를 통해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한남정맥 관통지역에 대한 야생생물의 서식지간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남정맥 주변 일대에 생태통로를 계획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폐수 발생이 예측되므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시군구에 폐수 발생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만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 청정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로 인해 인근 하천에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전 가능한 토사의 입경을 0.1mm로 설정하며, 각종 상수(계수)의 값은 평균치 또는 토사를 최대로 제거할 수 있는 값을 선정하여 침사지 면적을 설정 및 설치하고, 하천에서 작업 시 방지시설인 오탁방지막은 효과가 극히 미비하므로 다른 방지시설(침사지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계수(P6-258)는 지역별로 별도로 적용하거나, 산지는 0.5 평지·공지는 0.2를 적용하여 우수유출량 및 침사지 용량을 산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내용을 반영하여 침사지 등을 설치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되, 충분한 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및 안정적인 효율을 확보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법의 시설 설치를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충분한 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및 안정적인 효율을 확보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법의 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중 PM-10의 연간평균치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므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쾌적한 대기질을 위해 훼손수목을 이식 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많은 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훼손수목에 대해 최대한 이식토록 계획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사후조사지점에 공사로 영향을 받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하류 하천(금학천, 영문천, 금어천, 대대천 등)을 추가하고, 대기질 사후조사지점 중 사업장 주변 주거인구가 많은 포곡 IC(R-27)를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공사로 영향을 받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하류 하천을 포함하였으며, 대기질 사후조사지점 중 포곡IC 주변을 포함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작업으로 발생된 토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이용하여 공사장 등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잔토의 적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잔토가 발생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비옥토(농지에서 발생된 토사)는 농지 성토 등 적정 처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토공계획 수립으로 사토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1일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잔토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비옥토는 적정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 및 출입구에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자동식 및 수동식 세륜시설 각 1기 이상 설치, 높이 3m 이상의 방음·방진벽시설 설치 및 단계별 공사계획 수립, 출입차량의 속도 제한, 작업구역의 주기적 살수, 운반 차량(덤프트럭 등) 적재함에 덮개설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방음시설은 최소 3m(법적 최소기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위에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비산먼지 저감시설(살수 및 세륜시설) 운영으로 인해 또 다른 환경피해(하천에 토사유출 등)가 발생되어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공사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살수 및 세륜시설,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등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사업장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므로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법적 기준의 저감시설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저감시설 설치를 권장) -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당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별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제시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계획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발파공법은 50m 이내에서도 발파·소음진동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므로 발파가 아닌 저진동 기계굴착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계굴착은 근무시간(08시~18시)에 실시하는 등 인근 주민들과 시간대를 설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봉산2터널 및 삼가터널 인근에 위치한 보안건물의 이격거리는 최소 156m 이므로 터널 발파시 진동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터널 발파 공정은 주민과 협의하여 실시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으로 인해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 사업노선 500m 이내 건물에 대해 사전조사 및 공사 중에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굴착시 터널인근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굴착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오염총량 협의(14.12.14) 조건을 준수하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시 오염총량 할당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 협의 전까지 별도 협의할 것. 단 오염배출량 추가할당은 협의 제한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로 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에 대해 최대한 반영토록 계획하였으며,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시하였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의견수렴	총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공고 제2015-3017 호로 공고한 이천오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은 우리시와 도로 계획 노선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도로 계획 노선으로, 실시 계획등을 결정하고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법적 취지에 부적합 사항임을 감안 도로 계획 노선의 확정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등 추가 행정절차 진행의 취소를 요청하오니 공동 노선 지역간 행정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을 시행하여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비교·검토 최적안을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와 실시설계를 위한 노선 협의시 제안된 노선과 상이하며, 우리시와 협의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협의된 노선으로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를 재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시행하여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비교·검토 최적안을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구역 토지보상으로 인한 토지분할로 인한 북측부지 제척할 경우 현 건축물 건폐율 초과(16.2%→20.2%로 법적기준 20% 초과) ※ 도로면적 8,044㎡, 북측면적 36,622㎡ 총 44,784㎡ 제외 시 대지면적 181,283㎡ ○ 향후 추가적인 건축물 수평 증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제척면적을 최소화하여 건폐율 법적기준(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을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로 인한 경기장 북측 임야부분 단절로 기 계획된 산책로, 체력단련시설물 등 체육공원 기능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으로 훼손된 일부 원형지 구간은 복개구조물(310m)을 설치하여 복개한 후 상부 식재로 녹지활용 및 산책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각설치에 따른 옥외주차장 주차면수(약 40여대) 축소 및 주차장 활용방안 제한(교통영향평가 협의 조건인 추가 주차장 300대 확보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가교 경간장을 확대(35m→50m)하여 주차장 교각배치 조정 및 교량 하부공간 활용으로 주차면수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부분의 도로계획으로 옥외주차장 북측부분 투척경기장(70m*100m) 면적 확보 불가에 따라 보조경기장을 상시 개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실현 불가 ※대한육상연맹 등과 협의 결과 당초 계획된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투척경기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공인 1종 경기장 인증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시 노선조정(북측이동) 및 삼가교 경간장을 확대(35m→50m)하여 옥외주차장 북측부분 투척경기장(70m*100m)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인시민체육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운동장구역 원형 녹지율이 30.83%(70,257㎡)이나 고속도로 부지 제척 시 원형녹지율이 24.86%(56,206㎡)로 당초보다 5.97%(14,051㎡)의 원형녹지 감소로 변경협의 대상으로 협의 불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노선의 주변여건상 시민체육공원의 통과는 불가피하며, 원형지 훼손 일부구간에 박스(310m)를 설치하여 복개한 후 상부 식재로 녹지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으며, 도로사면부에는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총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에서 약 22m정도 높이로 도로가 지나가고 2층 데크에서 부터는 약 17m정도 높이로 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시민체육공원의 랜드마크적 이미지 훼손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후면은 맥조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오산구간은 복개구조물로 계획하여 상부식재로 녹지를 활용하여 지형에 순응하여 시민체육공원의 랜드마크적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경기장과 약 16.8~68.4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육상경기장은 경기 중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경기장 쾌적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경기장 통과구간 인근은 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소음 및 분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음 	

2.2.2 주민 의견수렴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설명회	총괄	화성시 주민의견 (주민 등 약 40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리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 방음터널 설치 및 마을에서 최대이격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 요구안 : 마을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농선을 넘어가도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으로 중리마을에서 최대이격하였으며, 방음시설 및 차폐식재 등을 통해 경관 및 소음, 분진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리마을은 동탄2신도시의 동쪽에 있는데, 운영시 면지가 쌓일 경우 대처방안과, 도로가 영구적인 구조물인 만큼 주 풍향인 편서풍을 고려하여 방지책 마련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시설 및 차폐식재 등을 통해 경관 및 소음, 분진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용인시 주민의견 (주민 등 약 60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곡읍사무소와 농협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성토로 계획됨에 따라 지역간 단절이 예상되어 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곡읍사무소와 농협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해 교량으로 변경 계획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곡IC램프 출입구를 45번 국도로 접속 되도록 변경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량이 적고, 국도 45호선 접속램프 계획시 경안천 횡단 및 용인경전철 근접통과 등으로 제한적 입지 조건으로 인해 설계 기준 및 기하구조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도12호선에 접속 및 포곡중학교까지 4차로 확장함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성3리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검토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된 주거지역은 2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주요 조망 지점에서의 경관변화는 미미하므로 차폐식재 및 비탈면식재 등을 통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설명회	총괄	용인시 주민의견 (주민 등 약 60명 참석)	○다중이용시설을 계획중이며, 시설을 가로 지르는 4차 선로의 도로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비좁은 마을 진입로 개선여부	○미반영 - 진입도로는 현도로폭원(B=6.0m)을 감안하여 6m폭의 횡단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등 상위계획이 없으므로 4차로 폭원 이상의 횡단시설 확보는 곤란함	
			○입지가 마성터널(영동고속도로)출구부에 위치하여 추후 이천~오산간 운영시 소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음대책 설치 요구	○반영 -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방음시설 계획 수립	
			○금어리 산 25번지 인근 입구를 높이고 대대리 산 409-1번지까지 활처럼 휘어진 노선이 아닌 일자된 노선으로 변경 요구	○미반영 - 주변 지형여건 및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였으며, 노선변경 시 상대민원 발생 등으로 노선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광주시 주민의견 (주민 등 약 40명 참석)	○도척IC 이후 터널 요구 및 당초 노선변경 사유	○미반영 -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터널노선의 경우 도척IC 위치변경으로 유정1리마을과 근접에 따른 상대민원 발생으로 산지부 토공통과 노선 선정	
주민공람		화성시 황**외 395명	○동탄2택지지구 A41블럭 북쪽 신리천교 교량구간에 환기를 위해 길이 120m 방음벽 형태로 생기는데 분진과 미세먼지 등에 노출이되므로 환기구의 위치를 이전 및 폐쇄요구	○부분반영 - 방음벽 설치구간을 추가 이격하여 계획하였으며, 설치구간의 연장을 120m에서 80m로 축소하였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공람	총괄	용인시 유**의 5명	○대대1리, 2리, 3리, 4리, 정수리 일원은 주거지역의 고속도로 근접에 따라 지역간 단절 및 소음·분진 등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노선 변경 요구	○미반영 - 주변 지형여건 및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였으며, 노선변경시 상대민원 발생 등으로 노선변경은 불가함	
		용인시 김**	○사업시행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예측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공사중 가설방음판넬 설치	○반영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계획함	
		용인시 김**외 13명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예측치가 야간기준치를 초과하므로 도로 운영시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	○반영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예측치가 야간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방음시설 설치를 계획함	
			○지삼로 509번길은 승용차/소형트럭 1대가 통과할 정도로 노폭이 좁으므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동원되는 각종 건설 중장비와 대형트럭의 통행에 매우 부적합하므로 별도의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여 공사차량등이 이용하도록 조치	○반영 - 공사시 지삼로 509번길 이외의 별도 공사용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음	
		용인시 (주)**	○도로계획선이 회사 사업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손실, 잔여부지 활용제약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막대하여 협의조정을 요청	○미반영 - (주)에스텍시스템 사업부지 측면 끝의 일부부지 저축은 한남정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며 노선 변경은 곤란함.	
		용인시 이**	○금어리 산25번지 입구에서 대대리 산409-1번지 끝까지 일직선으로 관통 및 현위치에서 4~5m 위로 올려 금어리 산25번지 북쪽 경계선 부분으로 변경 또한, 터널화 요구	○미반영 - 현지 지형여건 상 북측으로 노선으로 조정 하더라도 토피가 낮아 터널형성이 불가능하며, 노선변경시 신규 편입 토지주의 상대민원이 예상되므로 노선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공람	총괄	용인시 임**	○ 착공예정일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내년임에도 그동안 해당지역 당사자들은 어땀 안내와 협의도 없었으며, 정수리 마을 한가운데로 거대한 독을 쌓아 동네를 양분하는 일은 마을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정확히 어떤 형태로 마을이 남게될지 마을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고속도로에 편입된 당사자들에게 분명한 안내와 절차 설명	○ 반영 - 관련법령에 의거 신문공고 등을 통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마을이 양분되지 않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겠음	
		용인시 하**	○ 서용인 JCT 동남쪽 지역에 다음과 같은 시설요구 - 방음벽 4미터 이상 설치 - 배출되는 하수가 농업용 실개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하수관 설치 - 야간조명으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요구 - 농지출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대책 요구	○ 부분반영 - 소음영향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는 측구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유입토록 할 것임. - 야간조명으로 인한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명을 설치하겠으며, 부체도로를 계획하여 농지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	
		용인시 김**	○ 석성산은 현재 영동고속도로와 동백마성간도로로 인하여 6개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시 환경훼손은 볼을 보듯 뻔한 결과임. 또한, 석성산 아래 유방동 지장실 마을 동네는 현재도 영동고속도로의 차량소음이 기준치 이내이나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도로 개통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 하므로 사업계획 초기에 검토한 최초 노선(이동~양지 통과노선)으로 추진	○ 미반영 - 지장실 마을은 이천-오산 고속도로와의 약 300m 이격되어 있으며, 방음벽 설치 계획은 환경기준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여 필요구간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본 사업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교통 측면의 효율성, 관련 지자체, 공청회 등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된 노선으로 최초 노선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민공람	총괄	용인시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20**년 **월 **일 용인시와 **~**간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계획 승인 검토중에 있음.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최초 제안한 노선과 상이하게 도로노선이 변경되어 본 사업의 실시협약상 예정된 노선과 중복이 되며 또한 도로교통량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에 적극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관련법령, 실시협약 등에 따라 협의·처리하겠음 	
		광주시 수도사 **스님외 2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 앞 노선반대 및 터널설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주변 마을 및 공장지대 입지 조건과 57탄약대대 안전거리, 농경지 성토고 최소화 측면을 고려 시 노선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 및 분진에 대한 적정 저감계획을 수립함 	
		화성시 중리마을 주민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리마을과 인접하여 동탄 IC 등이 설치되므로 공장, 음식점 등이 편입되지 않도록 노선을 북측 능선부로 계획 및 추가 이격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봉산 능선 너머로 도로계획은 장대터널 발생 및 대규모 절토발생으로 동탄IC 설치가 불가하여 수용곤란하며, 마을과 최대한 이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주 민 공청회 (1차)		용인시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용인 JCT 동남쪽 지역에 다음과 같은 시설요구 - 방음벽 4미터 이상 설치 - 배출되는 하수가 농업용 실개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하수관 설치 - 야간조명으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요구 - 농지출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대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반영 - 소음영향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는 적정 배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겠음 - 야간조명으로 인한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명을 설치하겠으며, 부채도로를 계획하여 농지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공청회 (1차)	총괄	용인시 주**	○도로계획선이 회사 사업부지((주)에스텍시스템)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손실, 잔여부지 활용계약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막대하여 협의조정을 요청	○미반영 - (주)에스텍시스템 사업부지 측면 끝의 일부부지 저축은 한남적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며 노선 변경은 곤란함.	
		용인시 이**	○금어리와 대대리 마을을 양분하므로 터널로 변경하거나 노선 우회 요구	○미반영 - 금어리와 대대리 마을 통과구간은 장대교량으로 계획하여 마을 단절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 노선변경시 신규편입토지주의 등의 상대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노선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용인시 건설과 체육진흥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저축 최소화 등 용인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추진 요구	○부분반영 - 노선 북측 이동, 교량경간장 확대, 북개구조물 설치 등 저축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음	
		용인시 김**	○지삼로 509번길 배면 마을 터널화 요구 및 방음터널 요구(설치불가시 보상대책 제시)	○부분반영 - 소음검토결과 방음벽 설치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총괄	광주시 주민일동	○도척면 통과구간 터널설치 요구 - 터널 3개소(대안노선) 중 1개소를 줄이면 480m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지 - 국토부 예산문제로 터널설치가 불가한건지	○미반영 -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터널노선의 경우 도척IC 위치 변경으로 유정1리마을과 근접에 따른 상대민원 발생으로 산지부 토공통과 노선 선정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공청회 (1차)	총괄	광주시 주민일동	○곤지암JCT 연결로 토공구 간을 교량으로 변경 요구	○미반영 - 곤지암JCT Ramp-B구 간은 을계전원마을에 서 직접 조망되지 않 고, 현재 공용중인 중 부고속도로가 토공구 간인 점과 200m구간 내 일조권과 조망권의 영향을 받는 가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 여 토공으로 계획하였 으며, 주거지 및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않나오면 어떡해 야 하는지	○추후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 향이 있을 경우 대체 관정 등 대책을 강구 하겠음	
			○을계전원마을에 대해 10m 이격하여서는 분진 및 소음의 영향이 예상되 므로 충분히 이격하거나 터널로 변경 요구	○부분반영 -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하였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을 통 한 저감대책을 수립하 여 시행토록 하겠음	
			○도척구간 수목이식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호필요)	○반영 -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이식계획을 수립함	
			○충분한 방음시설 검토 필요	○반영 - 소음영향 검토를 통하 여 방음시설을 계획하 였음.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건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공청회 (2차)	총괄	용인시 하**	○ 용인해바라기요양원(한터로 음달안 마을)에 소음 및 분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노선변경 요구	○ 미반영 - 소음과 분진에 대한 적정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음	
		용인시 주**	○ 도로계획선이 회사 사업부지((주)에스텍시스템)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손실, 잔여부지 활용제약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막대하여 협의조정을 요청	○ (주)에스텍시스템 사업부지 측면 끝의 일부 부지 저축은 한남정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며 노선 변경은 곤란함.	
		용인시 이**외 3인	○ 금어리와 대대리 마을을 양분하므로 터널로 변경하거나 노선 우회 요구	○ 미반영 - 금어리와 대대리 마을 통과구간은 장대교량으로 계획하여 마을단절이 없도록 계획하였음 - 노선변경시 신규편입 토지주의 등의 상대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노선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용인시 김**	○ 지삼로 509번길 배면 마을 터널화 요구 및 방음터널 요구(설치불가시 보상 대책 제시)	○ 부분반영 - 소음검토결과 방음벽 설치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주민	○ 금어리는 57호선, 45호선 및 제2경부고속도로 등 여러노선이 통과하고 있으므로 방음터널 요구	○ 부분반영 - 소음영향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였음	
		주민	○ 서용인JCT 인근에 전원주택단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음대책 강구 및 부체도로는 최소 2차선 이상으로 요구	○ 부분반영 -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방음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체도로는 본 사업구간 외 구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주민	○ 마성3리 마을 인근 서용인JCT 램프 교량화 요구	○ 미반영 - 밀집된 주거지역은 2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경관변화는 미미하므로 처폐식재 및 비탈면식재 등을 통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임	

구 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 견 요 지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공청회 (2차)	총괄	주민	○에스피아 전원마을 앞에 도로는 소음영향이 우려되므로 복개 또는 방음터널 등을 요구	○미반영 - 소음영향예측결과 절토 구간으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주민	○포곡읍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포곡읍사무소,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고려하여 노선변경 요구	○미반영 - 주변 지형여건 및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였으며, 노선변경시 상대민원 발생 등으로 노선변경은 곤란 - 다만 행정밀집지 통과 구간은 지장물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대교량으로 통과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겠음	
주 민 공청회 (상략공고시 주민의견)	총괄	화성시 정**	○원안대로 도로개설 요구 및 중리IC 쪽으로 노선변경 요구	○미반영 - 최초 제안이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 대안 등의 국가 상위계획, 동탄(2)지구 계획 수립을 반영하여 계획된 노선으로 노선변경은 불가함	
		화성시 김**	○중리마을 주민의견 반영이 어렵고 불가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지점의 설계도면을 요구	○미반영 -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봉산 능선 너머로 도로 계획은 장대터널 발생 및 대규모 절토발생으로 동탄IC 설치가 불가하여 수용곤란하며, 마을과 최대한 이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화성시 김**외 19인	○동탄2택지지구 A41블럭 북쪽 통과구간 130m 정도를 방음벽 형태로 생기는데 분진과 미세먼지 등에 노출이되므로 환기구의 위치를 이전 및 폐쇄요구	○부분반영 - 방음벽 설치구간을 추가 이격하여 계획하였으며, 설치구간의 연장을 120m에서 80m로 축소하였음	